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학력·학위 검증지원기관 지정·운영 근거 신설 >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452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외국학력 · 학위 검증지원기관 지정 · 운영 근거 신설	2
2. 개정안 부칙	9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대식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6. 8. 5.
3. 회 부 일 : 2026. 8.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박사학위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 교육부장관은 외국 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편입학 과정에서 제출하는 외국학력·학위 서류는 외국공문서에 대해 협약가입국 간 인증을 생략하는 ‘아포스티유’에 따라 학위의 진위 및 수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고 있는데, 아포스티유는 학위 자체의 진실성이나 학력의 적법성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의 진위 및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위검증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협조 및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대학의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외국학력·학위 검증지원기관 지정·운영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력·학위의 검증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검증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대학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외국학력·학위검증 등) ①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교 학위의 진위(眞僞), 수준 검증 및 활용(이하 이 조에서 “외국학력·학위검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력·학위 검

	<u>증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검증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검증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검증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국내외 고등교육제도 및 학력·학위 등 고등교육 자격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u> <u>2. 외국 학력·학위 등 고등교육 자격의 국내 활용 및 진학자격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u> <u>3. 국내 학력·학위 등 고등교육 자격의 해외 통용 지원</u> <u>4. 고등교육 자격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지원</u> <u>④ 그 밖에 검증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 현행법은 대학의 입학 또는 편입학 요건으로 일정 학점 또는 학력 이상 취득 등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¹⁾

1) 【참고자료 1】 대학 입학 및 편입학 자격 참조

- 각 대학의 장은 현행법에 규정된 입학 또는 편입학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됨.²⁾

□ 각 대학은 졸업증명서, 학위기 등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다른 협약국에서도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³⁾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아포스티유는 학위 자체의 진실성이나 학력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위의 진위 등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⁴⁾

2)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4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제57조(입학자격 등)

3)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2007.7.14. 발효)에 따라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외국의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를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 참조, <https://www.apostille.go.kr/index.do>)

4) 호남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은 미국 주 정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받은 미국 대학 학위증을 제출하였으나, 출입국 당국의 검토 결과 해당 학위증을 수여한 대학은 2000년대 중후반에 인가가 취소되었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곳으로 나타나, 해당 대학의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는 사안이 발생함(연합뉴스, 「호남대 편입 中유학생 100여명, ‘美대학 가짜 졸업장’ 파문(종합)」(2026.4.2.), SBS 뉴스, 「“낙인찍힐 수 없어”...중국인 유학생 ‘가짜 졸업장’ 파문」(2026.4.5.) 등 참고)

□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또는 편입학 서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학위정보센터(NIC, National Information Center of ROK)로 지정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학위정보센터(KARIC, Korea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er)⁵⁾ 등을 활용하고 있음.

□ 국가학위정보센터(KARIC)는 2017년 9월,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협약」⁶⁾ 이행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19년에 국가학위정보센터(NIC)로 지정되었으며, 고등교육 자격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 자격 관련 정보와 자문 제공, 국내 수요자에 대한 해외 자격 관련 정보 제공, 해외 수요자에 대한 한국 고등교육 자격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

[국가학위정보센터(KARIC) 개요]

구분	내용
연혁	• 2019.5. 국가학위정보센터(NIC) 지정(2022.5., 2025.5. 재지정) * 교육부는 3년 주기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을 지정
수행 업무	• 고등교육 자격(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위한 자격(고등학교 졸업 자격) 관련 정보와 자문 제공 • 국내 수요자에 대한 해외 국가의 교육 제도, 자격 수준, 고등교육기관의 인가·인증 여부 등의 정보 제공 • 해외 국가학위정보센터, 고등교육기관 등에 대한 한국 고등교육 제도, 자격 수준, 고등교육기관의 유형 및 인가·인증 획득 여부 등의 정보 제공

주: 국가학위정보센터 홈페이지 - KARIC - 연혁, 센터소개, 교육부

5) 국가학위정보센터 홈페이지 - 고등교육 자격인정 - 고등교육 자격인정 질의서비스(Q&A)
(<https://www.karic.kr/ste/kar/cmm/biz/KaricQnaInquire.do?menuNo=4110104000>)

6)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 제8.3조
- 각 당사자는 고등교육 정보를 제공할 국가정보센터의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국가정보센터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 (원문) Each Party shall take adequat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a national information centre that will provide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The form of the national information centre could vary.

- 그러나 국가학위정보센터(KARIC)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근거⁷⁾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국가학위정보센터(NIC)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 개정안에 따라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학력·학위 검증 등을 위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검증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외국학력·학위 검증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검증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원하는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국내 검증지원기관이 법적 근거를 갖춘 외국기관⁸⁾과 대등한 수준에서 정보를 교류하여 업무 수행 신뢰도가 향상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7)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 외국기관 유사 입법례

· 일본 NIC-Japan

「독립행정법인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법(2023개정)」

제16조 기구는 제3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실시한다.

제7항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실시

나목. 국내외의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자격 및 학위, 기타 이에 준하는 정보

· 네덜란드 NUFFIC

「국가교육활동지원보조금법(2022개정)」

3A조 NUFFIC재단의 업무

2항 NUFFIC재단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는다.

a목. 네덜란드 이외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 또는 교육 관련 서류의 가치 및 진위여부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을 제공한다.

c목. 교육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해외 국가학위정보센터 설립·운영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 다만 개정안 제35조의2제1항은 대학의 장이 외국학력·학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학력·학위 검증이 대학의 책임하에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항에 외국학력·학위 검증에 대한 대학의 검증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이 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 제35조의2제2항의 검증지원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외국학력·학위검증)의 지원을 위하여 지정되는 것이나, 제2항에서 이러한 연계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검증지원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정안은 제35조의2제3항에서 검증지원기관의 수행 업무를 4가지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검증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검증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운영에 대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검증지원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행법에 대학의 유학생 유치 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학의 입학, 편입학 자격 확인에 대한 책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등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외국학력·학위 검증지원기관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만 규정함.
- 그러나 개정안의 검증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학위정보센터가 2025.5.~2028.4. 동안 검증지원기관으로 운영될 계획이므로, 해당 기관을 개정안에 따라 지정된 검증지원기관으로 간주하는 경과 조치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의 위임에 따라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에서 정해지게 되므로, 검증지원기관으로 운영 중인 국가학위정보센터가 개정안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⁹⁾

문 의 처
02)6788-5189

9) 관련 입법례: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18217호, 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형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별로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1

대학 입학 및 편입학 자격

○ 대학 입학 자격

구분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원격대학	기술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	- 고등학교 졸업자 - 위와 같은 수준 이상 학력 인정자 + 일정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학사학위과정	- 고등학교 졸업자 - 위와 같은 수준 이상 학력 인정자	- 전문대학 졸업자 - 위와 같은 수준 이상 학력 인정자 + 일정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학사 · 석사 학위과정 통합과정	- 고등학교 졸업자 - 위와 같은 수준 이상 학력 인정자 -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자	-
※ 2026.9.11.부터 아래 내용으로 개정 · 시행		
학사 · 석사 학위과정 통합과정,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과정 통합과정	- 고등학교 졸업자 - 위와 같은 수준 이상 학력 인정자	-
석사학위과정, 석사 · 박사 학위과정 통합과정	-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같은 수준 이상 학력 인정자	-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 소지자 -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자	-

주: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제57조(입학자격 등)

○ 대학 편입학 자격

구분	학교	대학 · 산업대학 · 원격대학
편입학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자 -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 전문대학 졸업자 -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자

주: 「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 제51조(편입학)

참고 2

해외 국가학위정보센터 설립·운영 현황

구분	담당기관	기관 유형	설립	조직	서비스	특징
일본	NIC-Japan	독립행정 법인·산하 조직	2019	11명	일본 고등교육 체계 및 자격 정보, 고 등교육기관 개관(입학요건), 해외 교육 체계 및 자격 정보, 국외 일본 교육기 관 목록 등 제공	'18년에 아·태지역 개정협약을 비준하 며 고등교육기관 평가 및 질 보장 기 구인 NIAD-QE에 국가학위정보센터 설 립
중국	CSSD (舊 CHESICC)	교육부 산하 기관	1991	약200명 (CSCSE)	고등교육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대입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시험 성적 표, 중등교육 졸업증명서 등 인증	교육부 주도로 디지털 학적 관리 및 온라인 학력/학위 인증서 발급 및 검증 서비스 무료 제공. 온라인 학력/학위 인증서 다운로드, 인쇄, 이메일 전송 가능하며 해외 학위 검증·인증은 유 학서비스센터(CSCSE)에서 담당
	CDGDC		2003		고등교육 학위증 등 인증 및 중국과 해외 학위 간 등가성 비교 연구, 학위 및 대학원 교육 관련 연구 진행	
	CSCSE		1989		해외 학위의 인증	
호주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중앙 부처	1989	1팀	해외에서 취득한 고등교육 학위 및 자 격인정, 고교 이상의 기술·직업교육에 관한 학력 및 자격인정	호주의 자격체계(AQF)와 연계, 고등교 육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
이탈 리아	CIMEA	정부지정 독립기관	1984	13명	국내외 학위 정보 서비스 제공, 학위 인정 평가, ENIC-NARIC, ERASMUS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웹사이트 운영	유럽 학위인정기구 네트워크(NARIC)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핵심 역할 수 행
영국	UK-ENIC	정부 계약 사설법인 기관	1997	4팀/ 14명	해외 자격 인정, 해외 경력 인정, 영어 수준 인정, 관련 유료 강의, 워크숍, 컨 퍼런스,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제공	고등교육 정보 제공 외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발전계획 진행, 정보의 신뢰 성·타당성 검증 및 정보의 업데이트 과정 중시
네덜 란드	NUFFIC	정부지정 독립기관	2008	25명	전 세계 고등교육 정보 구축 및 제공, 학위인정 연수제공, (해외자격 소지자 담당) 입학사정관 지원업무, 전 세계 학위인정 협력 프로젝트 지원	정부 지정 독립기관으로, 해당 업무를 위한 자금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음. 학위인정 평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나, 판단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부여 되지 않고, 이를 토대로 각 대학이 결정
노르 웨이	HK-DIR	정부설립 독립기관	2003	4+1팀/ 150명	취업 및 진학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의 평가 및 인정, 난민의 자격 평가 수행	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독립적 인 학위인정 권한을 가지고 해당 업무 를 수행함. 해당 기관에서 내려진 학위 인정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캐나 다	CICIC	주정부의 협의기구	1990	1팀	개인과 기관에 학술 및 직업 자격 증 명 인정에 대한 정보 소개 서비스 제 공, 캐나다 교육 시스템 및 질보장 관 련 정보 제공, 학술 자격 평가 단체 및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격인정관련 도구 개발	캐나다 주와 준주에서 실행하는 학위/ 자격 인정절차에 대한 정보 수집하고, 각 주의 협조를 받아 캐나다 전역의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정보와 평가 기 구들에 관한 정보 제공
몽골	Mon-Naric	정부산하 기관	2022	1팀	국내외 자격 평가 및 인증확인서 발급, 자격 인정 및 평가 정보 제공. 취학전 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직업기술교육 기관 인증 및 프로그램 인증 수행	정부산하기관인 MNCEA(교육인증기구) 에 설립된 몽골 NIC는 현재 웹사이트 개발 중

자료: 교육부